

## 2025년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추가지원 공고

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및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2025년도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추가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9월 9일

청 주 시 장

### 1. 지원규모 : 800억원

### 2. 신청 · 접수

구 분	지원규모	상담·접수	비고
1차분	400억원	2025. 1. 22.(수) ~ 한도 소진 시까지	소진완료
2차분	200억원	2025. 5. 12.(월) ~ 한도 소진 시까지	소진완료
3차분	200억원	2025. 9. 17.(수) ~ 한도 소진 시까지	

○ 신청방법 : 충북신용보증재단 '보증드림 앱'을 통한 비대면 신청 등

**비 대 면** \* 선착순 접수 자금으로 조기소진 우려에 따라 가급적 [비대면 창구 이용 권장](#)

- ① Play 스토어(앱 스토어) '보증드림 앱' 다운로드 → 보증신청 [보증드림]
- ② 웹 브라우저(<https://untact.koreg.or.kr>) 접속 → 보증신청
- ③ 비대면 보증 신청이 가능한 금융회사 앱을 통해 신청



**대 면**

- ④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([www.cbsinbo.or.kr](http://www.cbsinbo.or.kr)) 접속 후 상담예약 신청

### 3. 지원개요

#### ○ 지원대상 :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\*

\* (소상공인의 범위)

◇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【별첨1】 중 아래요건을 갖춘 자

- 제조업 · 건설업 · 운수업 · 광업 :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업체
- 그 밖의 업종 :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업체

#### ○ 지원내용

- 신규 창업자의 초기 운영자금
- 기존 사업자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

#### ○ 지원조건

- 대출한도 : 5천만원 이내(기 지원금액 포함)  
\* 청주시 지정 '착한가격업소'의 경우, 7천만원 이내
- 대출기간 : 5년 이내 일시상환(1년마다 기한연장)
- 대출금리 : 금융기관 금리에서 이차보전 금리를 제외한 금리
  - 이차보전 금리 : 연 3%
  - 지원기간 : 최대 3년

금융기관	협약금리	
	이차보전 지원기간(3년) 중	3년 초과 기한연장 시
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기업은행	<b>전액보증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고정금리 : 4.59%</li><li>· 기준금리(○ 91일) + 가산금리 1.5% 이내 * 청주시 지정 '착한가격업소'의 경우, 기준금리(○ 91일) + 가산금리 1.3% 이내</li></ul> <b>부분보증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기준금리(○ 91일) + 가산금리 2.0% 이내</li></ul>	<b>전액보증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기준금리(○ 91일) + 가산금리 1.5% 이내</li></ul> <b>부분보증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기준금리(○ 91일) + 가산금리 2.0% 이내</li></ul> <p>※ 기업은행의 경우, 금융회사 내규 적용</p>

- 기타사항 : 2025년 이전 대출 건에 대하여 총 대출기간 5년 범위 내 기한연장 가능. 다만,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
이차보전 지원은 중단되며, 3년 초과 기한연장 시 협약금리 적용 여부는 지원조건의 금융기관 별 대출금리 참조

## ○ 지원심사

-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및 금융기관 대출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여부 결정

## ○ 지원절차



\* 신용보증서 발급 시 신청인의 신용 및 재정상태, 경영능력,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## ○ 지원제외

- 금융 · 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
- 신청일 현재 휴 · 폐업자
-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 · 보증제한 업종
-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한도액인 5천만원을 기 받은 자  
\*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한도액 7천만원을 기 받은 자

## ○ 대출 취급 금융기관

### ◇ 청주시 소재 금융회사 영업점

- NH농협은행, KB국민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우리은행,  
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, IBK기업은행

## 4. 유의사항

- 충북신용보증재단 또는 금융기관 내규 등에 따라 신용보증서 발급 또는 대출 취급이 제한되는 경우, 자금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.
- 본 자금은 선착순 접수로 조기소진될 수 있으며, 가급적 비대면 신청방법 이용을 권장
- 지원 결정 후 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, 지원금액 회수 조치

## 5. 문의 및 접수처 : 충북신용보증재단

- 보증지원부(관할 : 서원구, 흥덕구) ☎ 043-249-5700
- 동청주지점(관할 : 상당구, 청원구) ☎ 043-279-7950

## 【별첨1】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

-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 :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.

###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

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)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식료품 제조업	C10	
2. 음료 제조업	C11	
3. 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15. 가구 제조업	C32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
17. 수도업	E36	
18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
19. 광업	B	
20. 담배 제조업	C12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29. 건설업	F	
30. 운수 및 창고업	H	
31. 금융 및 보험업	K	
32. 도매 및 소매업	G	
33. 정보통신업	J	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(E36 제외)	
35. 부동산업	L	
36. 전문 ·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
41. 교육 서비스업	P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
## 【별첨2】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 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 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 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통주점업
56212	무도유통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2	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·대리업(68221)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(68224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 중	통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 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2	카지노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
표준산업분류	업종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